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278-10



# 2025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임신·출산·영유아





#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http://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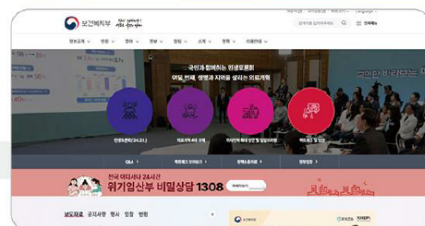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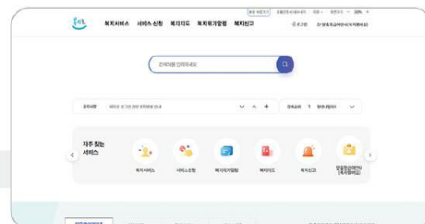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www.ssc.go.kr](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ww.mohw.go.kr](http://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본 책의 내용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임신·출산



## 임신준비

|                               |    |
|-------------------------------|----|
| 0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8  |
| 02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9  |
| 0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0 |
| 04 영양플러스                      | 12 |
| 05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13 |
| 06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14 |
| 07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15 |
| 08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16 |
| 09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17 |
| 1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18 |
| 11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19 |
| 1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21 |
| 13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무료 공익보험)     | 22 |
| 14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23 |

## 출산비 지원

|                                   |    |
|-----------------------------------|----|
| 1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24 |
| 16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25 |
| 17 출산비용 지원                        | 26 |

## 출산이후

|    |                       |    |
|----|-----------------------|----|
| 18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7 |
| 1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28 |
| 20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29 |
| 21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30 |
| 22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31 |
| 23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33 |
| 24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34 |
| 25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35 |

## 고용안정

|    |                                              |    |
|----|----------------------------------------------|----|
| 26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36 |
| 27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37 |
| 28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38 |
| 2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39 |
| 30 | 육아휴직 급여 지원                                   | 40 |
| 31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41 |
| 3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br>(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42 |
| 33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43 |

## 생활지원

|    |            |    |
|----|------------|----|
| 34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44 |
| 35 | 긴급복지 지원제도  | 45 |

# CONTENTS

## 영유아



## 보육비 지원

|    |                                 |    |
|----|---------------------------------|----|
| 36 | 가정양육수당 지원                       | 47 |
| 37 |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48 |
| 38 |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 49 |
| 39 | 0~2세 보육료 지원                     | 50 |
| 40 | 3~5세 누리과정 지원                    | 51 |
| 41 | 부모급여                            | 52 |
| 42 | 시간제 보육 지원                       | 53 |
| 43 | 아동수당                            | 54 |
| 44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55 |
| 45 |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56 |
| 46 | 장애아동 양육수당                       | 57 |
| 47 | 장애아동수당                          | 58 |
| 48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59 |

## 건강

|    |                       |    |
|----|-----------------------|----|
| 49 | 건강보험제도                | 60 |
| 50 | 국가건강검진제도              | 61 |
| 51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63 |
| 52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64 |
| 53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65 |
| 54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66 |
| 55 |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67 |
| 56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68 |
| 57 | 어린이 불소 도포             | 70 |
| 58 | 언어발달 지원               | 71 |
| 59 | 영양플러스                 | 72 |
| 60 | 영유아 건강검진              | 73 |
| 61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74 |

## 돌봄

|    |                |    |
|----|----------------|----|
| 62 | 가정위탁아동 지원      | 75 |
| 63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76 |
| 64 | 농번기돌봄지원        | 77 |
| 65 | 농촌아이돌봄지원       | 78 |
| 66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79 |
| 67 | 아이돌봄서비스        | 80 |
| 68 | 육아종합지원센터       | 82 |
| 69 | 찾아가는 돌봄교실      | 83 |
| 70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84 |
| 71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85 |

## 입양

|    |              |    |
|----|--------------|----|
| 72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87 |
| 73 | 입양아동 지원      | 88 |
| 74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89 |

## 생활지원

|    |                  |    |
|----|------------------|----|
| 75 | 긴급복지 지원제도        | 90 |
| 76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92 |
| 77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93 |
| 78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95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 ✓ 방법

- (방문)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은행),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가능)
- (팩스) 공단 지사
- (온라인) 공단·전담 금융기관(홈페이지, 앱, 전화),

정부24( [www.gov.kr](http://www.gov.kr) ) 홈페이지('임신'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온라인 임신출산정보' 등록 필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외)

### ✓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http://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 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
- 지원 시술 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

| 구분<br>(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       | 지원 금액<br>(연령구분 폐지)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 원          |
|                             | 동결배아 |       | 최대 50만 원           |
| 인공수정                        |      | 1~5회  | 최대 30만 원           |

※ 지원 금액 내 비급여항목 지원한도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 동결비 30만 원
- \* 지자체별 지원 내용 상이하나, 위 최소 공통 지원 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

### ✓ 방법

- (방문)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정부24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신청

###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1]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기관 안내

| 구분       | 운영기관                       | 주소                                                                            | 전화                                           | 누리집                        |
|----------|----------------------------|-------------------------------------------------------------------------------|----------------------------------------------|----------------------------|
| 중앙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 중구 을지로 245, 본관 2층                                                          | 02-2276-2276                                 | www.nmc22762276.or.kr      |
| 인천       | (의)아인의료재단<br>아인병원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72, 아인병원<br>5층                                                   | 032-466-3268                                 | www.id-incheon.co.kr       |
| 대구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67, 7층                                                          | 053-261-3375                                 | www.healthymom.or.kr       |
| 전남       | 의료법인<br>내일의료재단<br>현대여성아동병원 |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3층                                                           | 061-901-1234                                 | www.hwc1234.co.kr          |
| 경기       | 인구보건복지협회<br>경기도지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br>11, 3층                                                  | 031-255-3374                                 | www.happyfamily3375.or.kr  |
| 경북       | 경상북도<br>안동의료원              |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 054-850-6367                                 | happymoa.kr                |
| 서울       | 연세대학교<br>의과대학<br>강남세브란스병원  | (강남센터) 서울 강남구 연주로 211,<br>2동 3층<br>(송파센터) 서울 송파구 송파로 66, 가<br>든파이브 영관 8층      | (강남)<br>02-2019-4581<br>(송파)<br>02-6956-6248 | www.mindcare-for-family.kr |
| 경기<br>북부 | 동국대학교<br>일산불교병원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031-961-8500                                 | happyfamily.dumc.or.kr     |
| 경북<br>서부 | 경상북도<br>김천의료원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br>응급수납 2층                                                    | 054-429-8540                                 | www.healthymoa.kr          |
| 서울<br>서남 | 서울특별시<br>보라매병원             | (보라매센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br>15 전문건설화관 28층<br>(금천구센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br>239 금화빌딩 10층 | (보라매)<br>02-870-3617<br>(금천)<br>02-895-1002  | www.fmc.or.kr              |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부터 전북(예수병원), 경남(창원한마음병원)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각 1개소가 추가  
설치·운영됩니다.



## 영양플러스

-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분)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 ✔ **내용** 임신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에 대해 지원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 ✓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임신부 매년 10월경)

### ✓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 내용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후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한 지원)
  -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 필수 검사항목 : (여)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남)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 방법

- 온라인(e보건소, [www.e-health.go.kr](http://www.e-health.go.kr))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방문하여 검사
  -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관 확인하기 Click)

###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소급지원불가 :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 실시  
 \*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가능

#### 자주 하는 질문

##### 검사의뢰서를 꼭 지참하여야 하나요?

- 네.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가 지원사업의 대상자임을 인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지역·결혼여부·자녀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합니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내용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최초 2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0,760원)

※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 ✓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 [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 구분 |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
|    | 강원특별자치도 | 마리아의 집      | 033-263-6273<br>wigimom1308@hanmail.net       |
|    | 충청북도    | 새생명지원센터     | 043-211-3053<br>cjnewlife1@naver.com          |
|    | 충청남도    | 구세군 아람드리    | 070-4151-7616, 7617<br>arumdri-1308@naver.com |
|    | 전북특별자치도 | 기쁨의하우스      | 070-5165-7576, 8604<br>jeonbuk1308@daum.net   |
|    | 전라남도    | 성모의 집       | 061-277-1308<br>sungmo8004@hanmail.net        |
|    | 경상북도    |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 054-715-1326<br>gb1308@naver.com              |
|    | 경상남도    |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 055-231-0582<br>lifemam1308@hanmail.net       |
|    | 제주특별자치도 | 사회복지법인 청수   | 064-773-2010<br>momjeju2010@naver.com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 대상

-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 방법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무료 공익보험)

### 대상

주계약 태아

특 약 17~45세(22주 이내 임신부)

※ 다태아의 경우 각각 가입하되 특약은 다태아 중 1명만 가입 가능

### 내용

보장내용

주계약 태아의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100만 원(최초 1회에 한함)

특 약 임신중 질환별(임신중독증 10만 원, 임신고혈압 5만 원, 임신성당뇨 3만 원)  
진단보험금(최초 1회에 한함)

※ '희귀질환'이라 함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 보험료 : 우체국에서 전액 부담
- 납입기간 : 전기납(연납) 국가(우체국)에서 부담

### 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우체국
- 온라인신청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잇다보험앱(아이폰, 안드로이드)

### 문의

- 전화문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 관련 웹사이트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www.epostlife.go.kr](http://www.epostlife.go.kr))

#### 알려드립니다

우체국보험 모바일앱은 어디서 설치할 수 있나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Android



IOS

#### 자주 하는 질문

다태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해야하나요?

- 다태아는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다태아 해당여부를 고지하면 됩니다.  
단,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의 경우 '임신질환특약'은 1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 방법**
  - 정부24(맘편한 임신)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임신·출산 모바일앱은 어디서 설치할 수 있나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 [www.gov.kr](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에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 ✓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 ✓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 출산비용 지원

✔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내용**

| 대상                 | 지원내용                      |
|--------------------|---------------------------|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명당 120만 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 출생시<br>체중   | 미숙아                            |                |              |        | 선천성<br>이상아 |
|-------------|--------------------------------|----------------|--------------|--------|------------|
|             | 2.0kg~2.5kg 미만,<br>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 1인당<br>지원한도 | 3백만 원                          | 4백만 원          | 7백만 원        | 10백만 원 | 5백만 원      |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
|-------------------------------------------|--------|-------|-----|-----|
|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br>(장애의 정도가 심한<br>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br>(장애의 정도가 심한<br>장애인 산모 + 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                                           | 인력 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br>(장애의 정도가 심한<br>장애인 산모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                                           | 인력 4명  | 15일   | 25일 | 40일 |

###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부터 바우처 신청기한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025년부터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이후  
21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 ✓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은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12.1.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A형간염 백신은 2012.1.1.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내용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8종) 전액 지원

| 대상감염병          | 백신종류              | 횟수   | 접종 권장시기                                                      |
|----------------|-------------------|------|--------------------------------------------------------------|
| B형간염           | HepB              | 3    |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
| 결핵             | BCG(피내용)          | 1    | 생후 4주 이내                                                     |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DTaP*             | 5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4~6세) |
|                | Tdap/Td           | 1    | 6차(11~12세)                                                   |
| 폴리오            | IPV*              | 4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4~6세)              |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Hib*              | 4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
| 폐렴구균           | PCV               | 4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
|                | PPSV              | -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RV1               | 2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
|                | RV5               | 3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MMR               | 2    | 1차(생후 12~15개월), 2차(4~6세)                                     |
| 수두             | VAR               | 1    | 1차(생후 12~15개월)                                               |
| A형간염           | HepA              | 2    | 1~2차(생후 12~23개월)                                             |
| 일본뇌염           | IJEV<br>(불활성화 백신) | 5    |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6세), 5차(12세)            |
|                | LJEV<br>(약독화 생백신) | 2    |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 HPV**             | 2    | 1~2차(12세)                                                    |
| 인플루엔자          | IIV               | 1*** | 매년 1회<br>※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어린이 매년 9월경)                    |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확대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소개 참조

\*\*\* 생후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 ✓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알려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 원     |
|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 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 원     |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140만 원 |

### ✓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이후

24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 ✔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대상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

### 내용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24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사 용 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http://www.gov.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자주 하는 질문

##### 신청기한은 없나요?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24년 출생아부터는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2년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 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사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 및 재직여성

###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유형             | 지원내용                                                                                           |
|----------------|------------------------------------------------------------------------------------------------|
| 취업 상담          |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창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
| 직업교육 훈련        | •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
|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 지원<br>•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지원금(1인당 460만 원 한도) 지원                    |
| 사후관리 지원        |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br>•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
| 경력단절 예방 지원     | •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등 지원<br>• <기업>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saeil.mogef.go.kr](http://saeil.mogef.go.kr))

#### 자주 하는 질문

##### 인턴십(새일여성인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여성근로자(인턴취업자)에게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장려금(8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원

### ✓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육아휴직<br>(최대 1년 6개월*)<br>*부모가 모두 3개월<br>이상 육아휴직 사용,<br>한부모,<br>중증장애아동의<br>부모의 경우 최대 1년<br>6개월 | <p>통상임금의 100~80% 지급<br/> <b>(1~3개월)</b>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br/> <b>(4~6개월)</b>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br/> <b>(7개월 이후)</b>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p> <p><b>(부모함께육아휴직제)</b>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p> <p>* 사용기간에 따라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p> |
| 지원예시                                                                                         | <p>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250만 원(250만 원X100%, 최대 2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br/>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은 '25년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p>                                                                                                                                                                                                             |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 ✓ 대상

-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① 총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총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http://www.ei.go.kr))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상

-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br>*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br>*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br>(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br>* 1호~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 ① 총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총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http://www.ei.go.kr))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 대상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 출산전후<br>휴가            | 지급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li> <li>•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li> </ul> |
|                       | 지급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br>※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 유산·<br>사산<br>휴가<br>급여 | 지급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li> <li>•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li> </ul>                                                          |
|                       | 지급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br>※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 자주 하는 질문

##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응하는 금액)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 전부를 지원(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긴급복지 지원제도

###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구분       | 지원대상                                                                                                                                                                                                                                                                                                                                                                                                                                                                                                                                                                                                                                       |
|----------|--------------------------------------------------------------------------------------------------------------------------------------------------------------------------------------------------------------------------------------------------------------------------------------------------------------------------------------------------------------------------------------------------------------------------------------------------------------------------------------------------------------------------------------------------------------------------------------------------------------------------------------------|
| 위기<br>상황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br>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br>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br>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br>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br>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br>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br>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br>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br>-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br>주택임차료 체납 등<br>※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br>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br>-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br>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br>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79만 4,010원, 4인 기준 457만 3,330원) 이하                                                                                                                                                                                                                                                                                                                                                                                                                                                                                                                                                                                       |
| 재산       |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br>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br>※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br>•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br>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br>- 1인 가구 기준 839만 2,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09만 7,000원 이하                                                                                                                                                                                                                                                                                                                                     |

##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주<br>지<br>원         | 생계<br>(생계유지비<br>(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br>(4인 기준) 187만 2,700원                       | 최대 6회          |
|                     | 의료<br>(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 주거<br>(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br>임시거소 제공<br>(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br>(대도시, 4인 기준) 66만<br>2,500원 이내         | 최대 12회         |
|                     | 사회복지<br>시설<br>이용<br>(사회복지시설 입소<br>또는 이용서비스<br>(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br>(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br>가<br>지<br>원    | 교육<br>(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br>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br>중학생 18만 원<br>고등학생 21만 4,000원<br>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br>(4회*) |
|                     | 연료비<br>(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5만 원                                                      | 6회             |
|                     | 해산비<br>(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 장제비<br>(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 전기요금<br>(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br>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br>등 기타 지원               |                                                              | 횟수<br>제한 없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 양육수당                |       | 농어촌 양육수당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 24~35개월             | 10만 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24~35개월             | 20만 원 |
| 36개월 이상~<br>86개월 미만 | 10만 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36개월 이상~<br>86개월 미만 | 10만 원 |
|                     |       | 48개월 이상~<br>86개월 미만 | 10만 원      |                     |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http://www.gov.kr))에서 신청

###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 ✓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 야간연장보육                        | 야간12시간보육       | 24시간보육         | 휴일보육 |
|-------------------------------|----------------|----------------|------|
| 19:30~24:00<br>※ 07:30 이전도 가능 | 19:30~익일 07:30 | 07:30~익일 07:30 | 공휴일  |

### ✓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0~2세 보육료 지원

###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0~2세 아동

※ '23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 ✓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9만 4,000원~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연장보육 이용 안내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 3~5세 누리과정 지원

###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3~5세 유아

- 5세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4세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3세 : 2021년 1월 1일~2022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구 분            | 지원액(원/월) |        |       |
|----------------|----------|--------|-------|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 10만 원    | 28만 원  | 28만 원 |
| 보육료(어린이집)      |          |        |       |
|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 5만 원     | 7만 원   | 7만 원  |
| 누리과정 운영비(어린이집) |          |        |       |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5년 기준)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 자주 하는 질문

**유치원 입학후 유아학비 신청을 늦게 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 가능한가?**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학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보육료지원 받는 중에 중간에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신청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일정기간 비용이 학부모 자부담으로 부담처리됨. 이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한가?**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었더라도 유치원으로 교육기관을 옮겼다면 이는 유아학비를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학비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부모급여

### ✓ 대상

0~1세 아동

### ✓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25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40천 원 + 현금 460천 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 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 현금 25천 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단,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http://www.gov.kr) )에서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시간제 보육 지원

### ✓ 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2,000원

### ✓ 방법

- 1)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 2)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
  -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 ✓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 [www.childcare.go.kr](http://www.childcare.go.kr) )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립반은 월~금 9:00~18:00까지, 통합반은 월~금 9:00~16: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아동수당

### ✓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차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http://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 ✓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8만 7,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 ✓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 야간연장보육                        | 야간12시간보육       | 24시간보육         | 휴일보육 |
|-------------------------------|----------------|----------------|------|
| 19:30~24:00<br>※ 07:30 이전도 가능 | 19:30~익일 07:30 | 07:30~익일 07:30 | 공휴일  |

### ✓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 ✓ 내용

| 대상  | 24~36개월 미만 | 36~86개월 미만 |
|-----|------------|------------|
| 지급액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 장애아동수당

###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 구분                        | 중증장애아동수당<br>(중전1급, 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아동수당<br>(중전 3~6급) |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22만 원                       | 월 11만 원               |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br>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 월 11만 원               |
| 보장시설수급자<br>(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9만 원                        | 월 3만 원                |

###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건강보험제도

###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 요양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li> <li>•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li> <li>•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li> </ul> |
| 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br>•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br>(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는 20만 원 추가 지급)<br>•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국가건강검진제도

### ✓ 대상

| 구분               |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br>건강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li><li>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br/>(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암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li><li>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br/>*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li><li>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li><li>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li><li>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li><li>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br/>*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br/>※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br/>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유아<br>건강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만 6세 미만의 영유아</li><li>-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4회) 검진 실시</li></ul> <table><tr><th>구분</th><th>(1차)<br/>생후<br/>14~35일</th><th>(2차)<br/>4~6<br/>개월</th><th>(3차)<br/>9~12<br/>개월</th><th>(4차)<br/>18~24<br/>개월</th><th>(5차)<br/>30~36<br/>개월</th><th>(6차)<br/>42~48<br/>개월</th><th>(7차)<br/>54~60<br/>개월</th><th>(8차)<br/>66~71<br/>개월</th></tr><tr><td>건강<br/>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구강<br/>검진</td><td>-</td><td>-</td><td>-</td><td>○<br/>(18~29)</td><td>○<br/>(30~41)</td><td>○<br/>(42~53)</td><td>○<br/>(54~65)</td><td>-</td></tr></table> | 구분                | (1차)<br>생후<br>14~35일 | (2차)<br>4~6<br>개월   | (3차)<br>9~12<br>개월  | (4차)<br>18~24<br>개월 | (5차)<br>30~36<br>개월 | (6차)<br>42~48<br>개월 | (7차)<br>54~60<br>개월 | (8차)<br>66~71<br>개월 | 건강<br>검진 | ○ | ○ | ○ | ○ | ○ | ○ | ○ | ○ | 구강<br>검진 | - | - | - | ○<br>(18~29) | ○<br>(30~41) | ○<br>(42~53) | ○<br>(54~65) | - |
| 구분               | (1차)<br>생후<br>14~35일                                                                                                                                                                                                                                                                                                                                                                                                                                                                                                                                                                                                                                    | (2차)<br>4~6<br>개월 | (3차)<br>9~12<br>개월   | (4차)<br>18~24<br>개월 | (5차)<br>30~36<br>개월 | (6차)<br>42~48<br>개월 | (7차)<br>54~60<br>개월 | (8차)<br>66~71<br>개월 |                     |                     |          |   |   |   |   |   |   |   |   |          |   |   |   |              |              |              |              |   |
| 건강<br>검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강<br>검진         | -                                                                                                                                                                                                                                                                                                                                                                                                                                                                                                                                                                                                                                                       | -                 | -                    | ○<br>(18~29)        | ○<br>(30~41)        | ○<br>(42~53)        | ○<br>(54~65)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br>건강검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br>(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 밖 청소년<br>건강검진 |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 구분                          | 목표집합                                                                                                                                                                                                                                                                            |                                                                                |
|-----------------------------|---------------------------------------------------------------------------------------------------------------------------------------------------------------------------------------------------------------------------------------------------------------------------------|--------------------------------------------------------------------------------|
| 일반<br>건강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li> <li>•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C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li> </ul>                                                                                                                      |                                                                                |
|                             | 성·연령별 검사항목                                                                                                                                                                                                                                                                      | 실시시기                                                                           |
|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br>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                             | 고밀도(HDL)콜레스테롤                                                                                                                                                                                                                                                                   |                                                                                |
|                             | 중성지방                                                                                                                                                                                                                                                                            |                                                                                |
|                             | 저밀도(LDL)콜레스테롤                                                                                                                                                                                                                                                                   |                                                                                |
|                             | B형간염                                                                                                                                                                                                                                                                            | 40세                                                                            |
|                             | C형간염                                                                                                                                                                                                                                                                            | 56세                                                                            |
|                             | 골밀도검사                                                                                                                                                                                                                                                                           | 54, 60, 66세(여성)                                                                |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1회                                                                   |
|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                             |                                                                                                                                                                                                                                                                                 | 20~34세(2년마다)<br>35~39세(1회), 40~49세(1회)<br>50~59세(1회), 60~69세(1회)<br>70~79세(1회) |
|                             | 조기정신증                                                                                                                                                                                                                                                                           |                                                                                |
|                             | 20~34세 (2년마다)                                                                                                                                                                                                                                                                   |                                                                                |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 노인신체기능                                                                                                                                                                                                                                                                          | 66, 70, 80세                                                                    |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 암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암 : 위내시경검사<br/>(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li> <li>•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li> <li>• 대장암 : 1단계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시,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li> <li>• 유방암 : 유방촬영술</li> <li>•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li> <li>•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li> </ul> |                                                                                |
| 영유아<br>건강검진                 | 성장·발달이상, 비만, 시각·청각이상, 모유수유,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미디어노출, 치아 발육상태, 치아우식증                                                                                                                                                                      |                                                                                |
| 학생건강검진<br>(교육부)             |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                                                                                |
| 학교 밖 청소년<br>건강검진<br>(여성가족부)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                                                                                |

##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http://www.nhis.or.kr))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대상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 출생시<br>체중   | 미숙아                            |                |              |        | 선천성<br>이상아 |
|-------------|--------------------------------|----------------|--------------|--------|------------|
|             | 2.0kg~2.5kg 미만,<br>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 1인당<br>지원한도 | 3백만 원                          | 4백만 원          | 7백만 원        | 10백만 원 | 5백만 원      |

###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대상

-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
|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
|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 원 한도)          |

###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 ✓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은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731만 7,328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서울 4인 기준 4억 7247만 5482원) 이하

### ✓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 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http://cancer.go.kr))



##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 ✓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아동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 ✓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12.1.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A형간염 백신은 2012.1.1.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내용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8종) 전액 지원

| 대상감염병         | 백신종류              | 횟수   | 접종 권장시기                                                      |
|---------------|-------------------|------|--------------------------------------------------------------|
| B형간염          | HepB              | 3    |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
| 결핵            | BCG(피내용)          | 1    | 생후 4주 이내                                                     |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DTaP*             | 5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4~6세) |
|               | Tdap/Td           | 1    | 6차(11~12세)                                                   |
| 폴리오           | IPV*              | 4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4~6세)              |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Hib*              | 4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
| 폐렴구균          | PCV               | 4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
|               | PPSV              | -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RV1               | 2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
|               | RV5               | 3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MMR               | 2    | 1차(생후 12~15개월), 2차(4~6세)                                     |
| 수두            | VAR               | 1    | 1차(생후 12~15개월)                                               |
| A형간염          | HepA              | 2    | 1~2차(생후 12~23개월)                                             |
| 일본뇌염          | IJEV<br>(불활성화 백신) | 5    |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6세), 5차(12세)            |
|               | LJEV<br>(약독화 생백신) | 2    |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HPV**             | 2    | 1~2차(12세)                                                    |
| 인플루엔자         | IIV               | 1*** | 매년 1회<br>※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어린이 매년 9월경)                    |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확대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소개 참조

\*\*\* 생후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건강  
57



## 어린이 불소 도포

- ✓ **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 ✓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 ✓ **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언어발달 지원

### ✓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6만 1,360원, 지역 20만 8,471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 ✓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 영양플러스

-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영유아 건강검진

### ✓ 대상

6세 미만 영유아

### ✓ 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비용 전액 지급

| 구분       | (1차)<br>생후<br>14~35일 | (2차)<br>4~6<br>개월 | (3차)<br>9~12<br>개월 | (4차)<br>18~24<br>개월 | (5차)<br>30~36<br>개월 | (6차)<br>42~48<br>개월 | (7차)<br>54~60<br>개월 | (8차)<br>66~71<br>개월 |
|----------|----------------------|-------------------|--------------------|---------------------|---------------------|---------------------|---------------------|---------------------|
| 건강<br>검진 | ○                    | ○                 | ○                  | ○                   | ○                   | ○                   | ○                   | ○                   |
| 구강<br>검진 | -                    | -                 | -                  | ○<br>(18~29)        | ○<br>(30~41)        | ○<br>(42~53)        | ○<br>(54~65)        | -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http://www.nhis.or.kr) )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 ✓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가정위탁아동 지원

###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                                                                                  |
|--------|----------------------------------------------------------------------------------|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                                                     |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br>(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 영유아(만 6세 이하)를 보호하는 위기사동<br>가정보호사업 포함) |

###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 구분                             | 지원내용                                                      |         |
|--------------------------------|-----------------------------------------------------------|---------|
| 양육보조금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 원 |
|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br>(84개월~155개월)                           | 월 45만 원 |
|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 월 56만 원 |
| 디딤씨앗통장                         | 저축시 정부지원금 2배 추가적립(최대 월 10만 원 지원)                          |         |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br>(지원기간 12개월 이내) |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필요 시<br>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
|                                |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
|                                |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         |
| 상해보험료                          | 연 6만 8,500원                                               |         |
|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가정위탁, 위기사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 보호 시 아동 1인당<br>월 100만 원           |         |
| 아동용품구입비                        | 위탁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 지원 권고                                 |         |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애,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

###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 **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 ✓ **내용**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 ✓ **방법**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
- ✓ **문의** 가족센터(☎1577-4206, 🌐 [www.familynet.or.kr](http://www.familynet.or.kr))



## 농번기돌봄지원

- ✔ **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 **내용**
  - (시설비 지원)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지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 **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9, 🌐 [www.rhof.or.kr](http://www.rhof.or.kr))



## 농촌아이돌봄지원

- ✔ **대상** 농촌지역(읍면)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 **내용**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 서비스 종류    | 대상           | 이용 시간             | 돌봄 서비스 범위                                                                              |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36개월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           | 종합형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가사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유형 | 소득기준<br>(중위소득)<br>* 4인가구 기준 | 시간제(0~12세, 시간당 12,180원) |                   |                         |                   | 영아종일제(시간당 12,180원) |                   |
|----|-----------------------------|-------------------------|-------------------|-------------------------|-------------------|--------------------|-------------------|
|    |                             | A형<br>(2017.1.1. 이후 출생) |                   | B형<br>(2016.1.1. 이후 출생) |                   | 0 ~ 2세             |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br>(85%)        | 1,826원<br>(15%)   | 9,136원<br>(75%)         | 3,044원<br>(25%)   | 10,354원<br>(85%)   | 1,826원<br>(15%)   |
| 나형 | 120% 이하                     | 7,308원<br>(60%)         | 4,872원<br>(40%)   | 4,872원<br>(40%)         | 7,308원<br>(60%)   | 7,308원<br>(60%)    | 4,872원<br>(40%)   |
| 다형 | 150% 이하                     | 3,654원<br>(30%)         | 8,526원<br>(70%)   | 2,436원<br>(20%)         | 9,744원<br>(80%)   | 3,654원<br>(30%)    | 8,526원<br>(70%)   |
| 라형 | 200% 이하                     | 1,828원<br>(15%)         | 10,352원<br>(85%)  | 1,218원<br>(10%)         | 10,962원<br>(90%)  | 1,828원<br>(15%)    | 10,352원<br>(85%)  |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br>(100%) | -                       | 12,180원<br>(100%) | -                  | 12,180원<br>(100%) |

### 방법

- 직접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누리집 : 복지포(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 [idolbom.go.kr](http://idolbom.go.kr) )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http://idolbom.go.kr)),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 기준 확대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 (개선) 200% 이하
- 영아(0~2세) 돌봄시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 육아종합지원센터

- ✔ **대상** 영유아, 영유아 부모 및 양육자
- ✔ **내용** 공통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제공, 시간제보육 사업 운영 지원,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 ✔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 ✔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1661-5666, [central.childcare.go.kr](http://central.childcare.go.kr))



## 찾아가는 돌봄교실

- ✔ **대상**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 ✔ **내용**      운영비 지원

  - 차량을 이용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 ✔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6만 1,360원, 지역 20만 8,471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 내용

| 유형        | 지원내용                                                           |
|-----------|----------------------------------------------------------------|
| 돌봄 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br>(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구분        | 설치형태 |                             | 지원금 종류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
| 대규모 기업    | 단독   |                             | 시설전환비                     | 3억 원             | 소요비용의 60%                           |
|           | 공동   |                             |                           | 6억 원             |                                     |
|           | 공통   |                             | 교재교구비<br>(교체비)            | 5천만 원<br>(3천만 원)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                           | 4억 원             | 소요비용의 90%<br>(시설매입비 :<br>소요비용의 40%) |
|           | 공동   | 우선지원 대상기업<br>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시설전환비<br>시설건립비<br>(시설매입비) | 10억 원            |                                     |
|           |      | 우선지원 대상기업<br>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 20억 원            |                                     |
|           | 공통   |                             | 시설개보수비                    | 1억 원             |                                     |
|           |      |                             | 교재교구비<br>(교체비)            | 7천만 원<br>(3천만 원) |                                     |
|           |      |                             | 시설임차비                     | 3억원              | 소요비용의 80%                           |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 월 평균 근무시간         | 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          |
|-------------------|-----------------|----------|
|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주 40시간 이상         | 60만 원           | 138만 원   |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55만 원           | 121만 원   |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40만 원           | 86만 원    |
|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30만 원           | 52만 원    |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          |          |
|------|----------|----------|----------|----------|----------|
| 보육현원 | 39명 이하   | 40~59명   | 60~79명   | 80~99명   | 100명 이상  |
| 지원금액 | 월 200만 원 | 월 280만 원 | 월 360만 원 | 월 440만 원 | 월 520만 원 |

---

### ☑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elfare.comwel.or.kr/escac/>)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알려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
| 가정 내<br>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 원     |
|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 원     |
| 미혼모자가족<br>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 원     |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140만 원 |

### ✓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입양아동 지원

### ✓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 ✓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 구분         |       | 지원내용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       | 월 최대 20만 원                                                                                                                       |
| 장애입양아동     | 양육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72만 1,000원</li> <li>•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월 63만 4,000원</li> </ul> |
|            | 의료비   | 연 최대 260만 원                                                                                                                      |
| 의료급여       |       | 의료급여 1종 지원                                                                                                                       |
| 입양축하금      |       | 1회 200만 원                                                                                                                        |

### ✓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긴급복지 지원제도

###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구분       | 지원대상                                                                                                                                                                                                                                                                                                                                                                                                                                                                                                                                                                                                                                                                                                                                                                                                                                                                                |
|----------|-------------------------------------------------------------------------------------------------------------------------------------------------------------------------------------------------------------------------------------------------------------------------------------------------------------------------------------------------------------------------------------------------------------------------------------------------------------------------------------------------------------------------------------------------------------------------------------------------------------------------------------------------------------------------------------------------------------------------------------------------------------------------------------------------------------------------------------------------------------------------------------|
| 위기<br>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li> <li>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li> <li>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li> <li>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li> <li>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li> <li>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li> <li>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li> <li>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li> <li>※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li> </ul> </li> <li>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li> </ul> </li> </ul>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79만 4,010원, 4인 기준 457만 3,330원) 이하                                                                                                                                                                                                                                                                                                                                                                                                                                                                                                                                                                                                                                                                                                                                                                                                                                |
| 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li> <li>※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li> <li>•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li> <li>- 1인 가구 기준 839만 2,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09만 7,000원 이하</li> </ul>                                                                                                                                                                                                                                                                                                                                                                                                                                                                                                                |

##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주<br>지<br>원         | 생계<br>(생계유지비<br>(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br>(4인 기준) 187만 2,700원                       | 최대 6회          |
|                     | 의료<br>(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 주거<br>(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br>임시거소 제공<br>(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br>(대도시, 4인 기준)<br>66만 2,500원 이내         | 최대<br>12회      |
|                     | 사회복지<br>시설 이용<br>(사회복지시설 입소<br>또는 이용서비스<br>(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br>(4인 기준)<br>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br>가<br>지<br>원    | 교육<br>(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br>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br>중학생 18만 원<br>고등학생 21만 4,000원<br>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br>(4회*) |
|                     | 연료비<br>(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5만 원                                                      | 6회             |
|                     | 해산비<br>(출산 지원)                                              | 70만 원<br>(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 장제비<br>(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 전기요금<br>(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br>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br>등 기타 지원            |                                                              | 횟수<br>제한<br>없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 ✓ 내용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20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 대상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내용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4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관광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http://www.mnuri.kr) ) 또는 모바일앱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

### ☑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http://www.mnuri.kr) )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의)

#### 알려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 자주 하는 질문

#####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 재충전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5.2.3.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설치, 가입(인증) 후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

### 자주 하는 질문

####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25.12.31.)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명의자 사망 시에는 카드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다 사용했지만, 계속 할인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비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100원 이상~3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합산한 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SNS채널, 복지아는게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
-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uxgxixlxd](https://pf.kakao.com/_uxgxixlxd))
- 복지아는게임 카페(<https://cafe.naver.com/cafe1535>)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 **대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 ✓ **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펴낸곳**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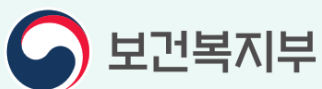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  
범부처정보관리부

**인쇄** 2025년 6월 30일  
**디자인** 케이엠커뮤니케이션(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278-10

※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함께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